

## 불법점용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불법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제 목 :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
- 처분근거 : 도로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 공고기간 : 2023.03.28. ~ 2023.04.11. (15일간)
- 공고내역 :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 관련 문서 참조
- 안내
  - 문의전화 : 의견제출 문의(도로안전운영과 061-740-1040)
  - 주소 : 전남 순천시 지현길 92, (FAX : 061-744-5761). 끝.



국토교통부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신 윤X동 귀하 (우57522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곡순로 1318)

(경유)

제목 불법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등) 관련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윤득동)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무소에서 관리중인 도로구역 내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된 처분의 제목	변상금 징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등)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불법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등)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b>「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b>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 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부서명	도로안전 운영과	담당자	양복만
		주 소	(57997) 순천시 지현길92			전화번호	061-740-1040
		전자우편 주소	qhraks70@korea.kr			팩스번호	061-744-5761
	제출기한	2024년 04월 10일까지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으면 부과내용에 동의 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조속히 도로점용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평균공시지가 산정내역 및 변상금 사전통지서 각 1부.  
2. 의견서제출서 서식 1부. 끝.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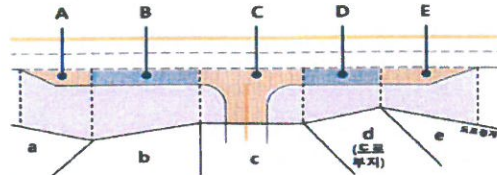
공무직	양복만	주무관	전현호	도로안전운영 전결 2024. 3. 27.	과장	김대겸
협조자						
시행	도로안전운영과-1482	(2024.03.27)		접수		
우	57997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9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a href="http://www.molit.go.kr/irocm">http://www.molit.go.kr/irocm</a>
전화번호	061-740-1040	팩스번호	061-744-5761	/ qhraks70@molit.go.kr		/ 비공개(5)

**평균 공시지가 산출 내역**

허가번호	본청92-032		점용기간	202230101 ~ 20231231	
점용목적	공정 진출입로		점용면적(m <sup>2</sup> )	295	
점용장소	곡성군 삼기면 과소리 395-4번지 내				
인접지번호	조사	기준연도	2023년		성명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점용지 면적(A, m <sup>2</sup> )	공시지가(a, 원)
곡성	삼기	과소	395-1	295	40900

**평균공시지가 40,900원**

[ 평균공시지가 산출 근거 ]



- 기호설명
- A, B, C, D, E : 각 도로 점용지의 면적
- a, b, c, d, e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필지의 가격
- 평균공시가격 =  $(A \times a + B \times b + C \times c + E \times e) / (A + B + C + E)$
- 도로부지(d)는 일반적으로 지가별 공시하지 않음(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 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	① 성 명	윤×동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581013
	③ 주 소	곡성군 삼기면 곡순로 1×××	④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허가사항)			불법점용 면적(m <sup>2</sup> )	점유기간	점유 사유	변상금 (예상)(원)
점용장소	허가면적 (m <sup>2</sup> )	점용시설물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395-4	295	공장 진출입로	295	20230101 ~ 20231231	불법점용	289,570

도로점용료 산출공식 = 면적 점용료 = 면적(m<sup>2</sup>) ×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 (사용일수 ÷ 해당 연도의 총일수)

변상금(예상)(원) = 도로점용료 × (120 ÷ 100) 의 총합

부 과 기 간	점용면적 (m <sup>2</sup> )	평균지가 (원)	법정요율	공시지가 산정금액	가산금	사용 일수	변상금	부과 여부
20230101 ~ 20231231	295	40,900	0.02	241,310	1.2	365	289,570	
합계							289,570	

「도로법」제72조에 의거 귀하께서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 04월 10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평균지가 산출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2024년 03월 26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윤×동 귀하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란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신 김 x x 리 귀하 (우57659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x x)

(경유)

제목 불법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등) 관련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김사배리)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무소에서 관리중인 도로구역 내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된 처분의 제목	변상금 징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등)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불법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등)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p> <p>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 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p>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부서명	도로안전 운영과	담당자	양복만
		주 소	(57997) 순천시 지현길92			전화번호	061-740-1040
		전자우편 주소	qhraks70@korea.kr			팩스번호	061-744-5761
	제출기한	2024년 04월 10일까지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으면 부과내용에 동의 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조속히 도로점용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평균공시지가 산정내역 및 변상금 사전통지서 각 1부.  
2. 의견서제출서 서식 1부. 끝.



##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

공무직	<b>양복만</b>	주무관	<b>전현호</b>	도로안전운영과김대경 장
협조자				
시행	도로안전운영과-1481	(2024.03.27)	접수	
우	57997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9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a href="http://www.molit.go.kr/irocm">http://www.molit.go.kr/irocm</a>
전화번호	061-740-1040	팩스번호	061-744-5761	/ qhraks70@molit.go.kr / 비공개(6)



### 평균 공시지가 산출 내역

허가번호	순국91-116	점용기간	20230101 ~ 20231231		
점용목적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점용면적(m)	77		
점용장소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346-63지 내				
인접지번 조서	기준연도	2023년		성명	김 X X 리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점용지 면적(A, m <sup>2</sup> )	공시지가(a, 원)
구례	구례	신월	346-2	77	104300

**평균공시지가 104,300원**

[ 평균공시지가 산출 근거 ]

○ 기호설명  
 - A, B, C, D, E : 각 도로 점용지의 면적  
 - a, b, c, d, e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필지의 가격

○ 평균공시가격 =  $(A \times a + B \times b + C \times c + E \times e) / (A + B + C + E)$   
 \* 도로부지(는)는 일반적으로 지가를 공시하지 않음(무등산공시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 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	① 성 명	김* * 리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550426
	③ 주 소	구례군 신촌길 * * - * *	④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허가사항)			불법점용 면적(m <sup>2</sup> )	점유기간	점유 사유	변상금 (예상)(원)
점용장소	허가면적 (m <sup>2</sup> )	점용시설물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346-63지 내	77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77	20230201 ~ 20231231	불법점용	104,550

도로점용료 산출공식 = 면적 점용료 = 면적(m<sup>2</sup>) ×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 (사용일수 ÷ 해당 연도의 총일수)  
 변상금(예상)(원) = 도로점용료 × (120 ÷ 100) 의 총합

부 과 기 간	점용면적 (m <sup>2</sup> )	평균지가 (원)	법정요율	공시지가 산정금액	가산금	사용 일수	변상금	부과 여부
20230201 ~ 20231231	77	104,300	0.02	160,622	1.2	198	104,550	
합계							104,550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귀하께서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 04월 10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평균지가 산출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2022년 03월 26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김\* \* 리      귀하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